

<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>

보내는 사람

○○세무서장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번지

☎ ○○○-○○○

요금후납

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

받는 사람

님 귀하

☎ ○○○-○○○

※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(부동산임대업자 제외)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.

⇒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, 영세율·재고납부세액·가산세·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(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4호서식)를 작성해야 하고,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(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)

관리번호	처리기간	즉시
신고기간	년 (월 일 ~ 월 일)	

사업자	상호	성명(대표자명)	사업자등록번호
	주민등록번호	전자우편주소	전화번호
	사업장 소재지		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

신 고 내 용

구 분		금 액		부가가치율	세 율	세 액
매 출	21.6.30. 이전 공급한 분 (1)		×	×	10/100	(가)
	21.7.1. 이후 공급한 분 (2)		×	×	10/100	(나)
공 제	매입세금계산서상 21.6.30. 이전 공급받은 분 (3)		×			(다)
	세액 합계 21.7.1. 이후 공급받은 분 (4)		×			(라)
세 액	신용카드매출금액 21.6.30. 이전 공급한 분 (5)		×			(마)
	합계 21.7.1. 이후 공급한 분 (6)		×			(바)
액	의제매입세액 공제(면세농산물등 구입금액) (7)		×			(사)
납부할 세액 ((가)+(나)-(다)-(라)-(마)-(바)-(사))					(8)	
예정고지세액					(9)	
차감납부할 세액 { (8)-(9) }					(10)	

- (3):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,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, 세액란에는 (금액 ×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)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.
- (4):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,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, 세액란에는 (금액 × 0.5퍼센트)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.
- (5):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,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, 세액란에는(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× 13/1,000,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/1,000)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(6):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,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, 세액란에는 (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× 10/1,000,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/1,000)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※ (5)와 (6)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,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,000만원을 한도로 적습니다.
- (7): 음식점업,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,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,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2/102,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은 8/108(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/109), 제조업은 6/106을 적용합니다.

면 세 수 입 금 액

업 태	종 목	업종코드	금 액
(11)			
(12)			
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4조제3항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제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세무서장 귀하

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

(2쪽 중 제2쪽)

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										
구분	매입처수	매수	공급가액				세 액			비고
			십억	백만	천	일	백만	천	일	
총합계										
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 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										
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은 분										

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명세

번호	거래처(상대방)		매수	공급가액				세 액			비고
	사업자등록번호	상호(법인명)		십억	백만	천	일	백만	천	일	
1											
2											
3											
4											
5											
6											
7											
8											
9											
10											

※ 첨부서류: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(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음식점업자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<회송용>

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

우표

보내는 사람

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번지

〇〇〇

☎〇〇〇-〇〇〇

받는 사람

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번지

〇〇 세무서장

☎〇〇〇-〇〇〇